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74
------------	------

발의연월일 : 2016. 10. 24.

발의자 : 주승용 · 이동섭 · 김정우
윤영일 · 최도자 · 이용주
장정숙 · 강창일 · 이찬열
김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항 ·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역 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 · 출항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의 특성에 맞는 예인선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 수요에 비해 예선이 부족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예인선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재적소에 선박의 입 · 출항이 불가능하게 됨.

이에 당해 항만에 예선을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u> <u>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u> <u>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u> <u>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u> <u>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u> <u>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u> <u>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u> <u>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u> <u>다.</u></p>
<u><신 설></u>	